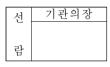
제3086호 2024, 4, 24,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편집인: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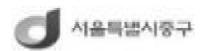
 ● 고 시 제2024-26호: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2
◉ 광고	
제2024-455호 :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3
제2024-457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등록 공고	13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						
공람						



제3086호 13-2 2024. 4. 24.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26호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4, 2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24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A)	구성비	기정예산(B)	구성비	중감액 (A-B)	중감률
	계	582,066,290	100.00%	582,066,290	100,00%	0	0.00%
일	! 반 회 계	530,458,901	91,13%	530,458,901	91,13%	0	0,00%
٩	· 별 회 계	51,607,389	8,87%	51,607,389	8,87%	0	0,00%
	의료급여	304,300	0.05%	304,300	0.05%	0	0.00%
	주 차 장	51,303,089	8.81%	51,303,089	8.81%	0	0.00%

※ 내부유보금(일반회계,593,857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규모 변동 없음.

콩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5호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0호(2016,10,6.)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2021-231호 (2021.5.20.)로 정비계획 결정(변경)된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2.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중구청 도심정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I.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 변경없음

¬ н	구역명	위치		면 적(㎡)	비고	
구 분	T 4 7	H 1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꼬
	을지로3가	중구 수표동				서울특별시고시
기 정	도시정비형	35-13번지	42,641.6	-	42,641.6	제2016-310호
	재개발구역	일원				(2016.10.6.)

2. 정비지구 지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위치	시행면적	_	비고		
	시구경	H 1	(m²)	획지면적(㎡)	정비기반시설(㎡)	미끄	
7]	정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지구	중구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976.0	1,619.5	356.5	-

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제3086호 13-4

구 분	rst #1		비율	비고		
	명 칭	기 정	변 경	변경후	(%)	미끄
합	계	1,976.0	-	1,976.0	100.0	-
71,1-1,1	소계	356.5	-	356.5	18.0	-
정비기반 시설 등	도로	112.2	-	112.2	5.7	1
115 0	공원	244.3	-	244.3	12.3	-
ই্	지	1,619.5	-	1,619.5	82.0	-

2. 용도지역·지구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7 4		면적(㎡)		u10 (o/.)	비고	
	구 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비율(%)	비과	
	합계	1,976.0	-	1,976.0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976.0	-	1,976.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1	방화지구	-	수표동 27-1 일원	55,151 (1,976.0)	-	-	1973.8.1. (건고시 제317호)	집단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 신설

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단위 : 원)

		<u> 종전토지등의</u>	추산액	분양예정의	ul O HEIM	מסובובות גבל	HELE
	구분	금액 비		대지평가차액	비용부담액 (C)	추정 권리기액 (A+B+C)	분담률 (%)
		(A)	(%)	(B)	(-)	(
	합계	90,725,470,680	100.0	21,440,625,781	106,796,924,580	218,963,021,041	100.0
토							
ㅣ지	을지로3가5-4 외	89,567,005,680	98.72	21,166,852,447	_	110,733,858,127	50.57
등	17필지	09,507,005,000		21,100,032,447			
소							
유	응지로 3기5-74	1,158,465,000	1,28	273,773,334	_	1,432,238,334	0.65
자		.,,,		,		.,, 0,00 .	
	사업시행자	-	-	-	106,796,924,580	106,796,924,580	48.78

주) 상기 권리가액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및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 시 종후자산(신축건축물)의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이며 종전자산은 최초 사업계획승인인가 시 기평가 완료

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추정 권리가액	분양 예정	l가(원/㎡)	개별 분담금 산정		
구분		수강 편의기액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기를 판매하 연정		
	합 계	218,963,021,041					
토지등 소유	을지로3가5-4 외 17필지	110,733,858,127	11,515,152	11,515,152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 (시설별 분양 예정가(원/㎡)		
자	을지로3가5-24	1,432,238,334			× 분양받는 면적(㎡))		
	사업시행자	106,796,924,580					

주) 분양예정가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의해 확정(변경)될 예정이며, 분담금은 토지등소유자별 권리가액 및 분양신청 물건에 따라 산정하며 관리처분변경계획 수립시 확정(변경) 예정

다.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산출근거

1 10-11 1 2 11		
구분	금 액(원)	비고
총금액	218,963,021,041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대지비	112,166,096,461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공시비	103,257,000,000	• 종전 관리처분시 종후감정평가액 동일단가적용
대지조성비	3,539,924,580	• 명도비용 등
분양예정 대지평가액	115,706,021,041	• 대지비+대지조성비
종전토지등의 추산액(A)	90,725,470,680	• 2023년4월 구청선정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B)	21,440,625,781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등의 추산액
비용부담액(C)	106,796,924,580	• 공사비+대지조성비
분담금 추산액	218,963,021,041	• A+B+C

주) 상기 비용은 추산액으로서 향후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건축계획, 사업규약, 자금계획 및 관리처분 변경계획 수립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변경) 예정 4.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 조서

	н	규모			716	사 용	연장	-121	2.73	주요	\$1 \$ 7 1 7401	יום מו	
구	준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능	형태	(m)	기점	종점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7]	정	중로	3	3	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변	경	중로	3	3	9.5~13 (1.5)	집산 도로	177 (41.7)	을지로3가 5-4	입정동 262	일반도로	공공청사	2010.8.26. (서고제306호)	을지로 11길
7]	정	소로	1	b	10 (1.0)	집산 도로	307 (36.2)	을지로3가 95-5	수표동 56-11	일반도로	-	2005.8.25. (서고제255호)	충무로 9길

■ 변경사유 : 중로3-3호선은 수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결정(변경)(서고 제2021-697호)에 따라 도로 폭원의 일부 변경이 반영된 사항임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나. 공간시설

1)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시 114명 시설의		시설명 시설의 위치			면 적(㎡)		51 5 2 3 2401	비고
구분	번호	시결정	종류	Ħ A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공원	역사공원	을지로2가 101-43 일원	1,551.0 (244.3)	-	1,551.0 (244.3)	2016.10.6. (서고 제2016-310호)	-	

주) ()는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내 편입면적임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 계획 : 변경없음

가. 정비기반시설 부닦 계획

구분	지구명	시행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 존공공용 지 (㎡)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 담율 (%)	비고
기정	을지로3가구역 제9지구	1,976.0	1,619,5	356,5	-	-	356.5	18.0	-

주) 순부담률 = 순부담면적 / (시행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공공용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 × 100

2024. 4. 24.

- 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확보) 계획
- 1) 정비기반시설 등 부담면적(관리청으로 무상 귀속)

	기 정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 류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3	신 계		356.5							
			5-1		26.7							
	0713 271		5-2		11.5							
			5-3		3.7							
			5-4		25.1							
			5-18	도로	9.0							
제9지구	을지로 3가		5-19		8.6							
			5-21		15.1							
			5-31		4.4							
			5-32		3.0							
		5-33			5.1							
	을지로	공동	101-21	ี ก 0 1	109.1							
	27}	분담	101-43	공원	135.2							

주)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CAD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산출하였으며,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

2) 국공유지 매입대상

7 19	위 치 지목 면 적 (㎡) 공부(공유지분) 편입		71 0	면 적	(m²)	จไอไร้ม	비고
구 분			편입(공유지분)	관리청	미꼬		
9지구	을지로3가	5-24	도	23.1 23.1		국(국토교통부)	

주) 을지로3가 5-24번지는 지목상 도로이나,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됨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해당없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변경 1)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역 ·	구분	가구 또	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					
구분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위치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 축	철거 이주	비고
기정	을지로3가 구역 제9지구	1,976.0	-	1,619.5	을지로3가 5-1번지 일원	17	ı	-	17	-	-

2) 건축시설계획 : 변경

	구분	가구 또는		위치		주 된	건폐율	용적	_	높이(m)			
_ ' '8 '8	면 적(㎡)	명칭	면 적(㎡)	'' '		<u>용도</u>	(%)	(%)					
3가구역	1,976.0	_	1,619,5	을지로3가 !	5-1	주거, 숙박	60 이하	1,028		70 이하			
변경 제9지구	1,570.0		1,015.5	일원		업무	60 이하	1,077	이하	77 이하			
		 주거용적 	률 완화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	(상업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인	대주택 가	능)				
		(서고 제2019-343호)											
		○ 주택공급계획 : 108세대											
		○ 전체 건립	○ 전체 건립규모(전용면적기준)										
		- 전용면	적 60m²이	하 주택비율	: 10	00%							
		- 공공주	택 전체 시	레대수의 60%	이상	· 전용 40㎡	이하 확보						
주택의 규모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무역의 규모 및 규모별	기정	아이일 것											
건설비율		구분		전용면적		세대수	ŀ	미율	1	비고			
		olul H	o.b.	40 m²० हे }		31세대	28	.70%					
		일반분	·%	50m²이하		72세대	66	.67%					
		주거용적률	<u> </u>	40m²이하		5세대	4.	63%	.,				
		따른 공공		50m²이하		-		-	임	귀주택			
			합계 108세대 100.0										
	변경	○ 해당없음											
건축물 건폐율		○ 개 8 km ○ 건폐율 :		i}									
인국을 한테를 완화에 관한	신설			')㎡ 미만의 소-	규모	대지로 50%	이하 의무기	준을 확보해	하기 어려	Q			
계획				원회 심의를 통						_			
							-						
		- 0-12 .	0.0		001	altl 310							
				+ ③ = 1,028	8% '	이하 석용							
		① 기준용적	_	№ ㅓ용용적률 완호	1=1-	. 2000/ 740							
		(2) 33/14	에 따른 이	1용용식물 원외	L.Q.	• 200% 작용	•						
		목적	인선	티브 대상			요건		인센 티브	인센티 <u>브</u> 량			
		516174	녹색	건축물 인증		그린1	등급(최우수)			0			
		친환경 개발		물에너지소비		240(k	Wh/m²·y)미만		100%				
건축물		(의무)		총량제 너지 이용시설), 11%이상(비	조거)					
용적률 완화에	기정	생활SOC		; 공연 장, 박물	30	변법 등록대상,				200%			
관한 계획		문화	-14-71	관,	0 1		막줄판 및 미국 화진흥법 등록		40%	적용			
		인프라		영화상영관 등	개시	생관리지침에 E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활성화 용 도	- 11 (05-1:10-11	시	0 1	30%				
		후 9억	공공	보행통로 등	자	상관리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30%				
③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 228.93% 산식 = 1.3α × (기준용적률 + 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													
공공시설 = 1.3 × (356.5m²/1,619.5m²) × (600% + 200%) = 228.93%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													
		<u> </u>		00 IEI	, (.,					

2024. 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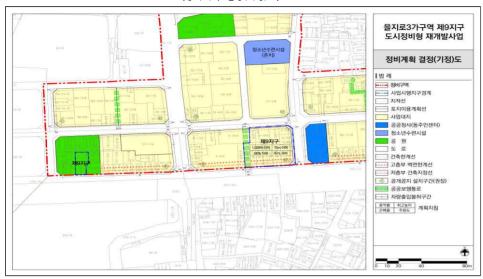
구분 명칭	구 분 면 적(㎡)	가구 명	또는 획7 치 며	시 구분 적(㎡)	위 :	١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	- -	는 이 (m)				
0 0	<u> </u>	용① 기	적률 : ① 준용적률	+ ② - : 600%	+ ③ = 1, 0 1 : 210%		하 적용	(90)	(90)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전기차충	충전소 설치			차 조례에 따른 항 1/2이상 초괴	날치 시	정량부여 (최대 20%)	20%				
		계 획유 도 변경			친환경	에너지 신재/	축물 인증 효율등급 맹에너지 용시설	• 3개 형	목 모두 법	령에 따른 기준 초	과 시	정량부여 (최대 30%)	30%		
			도시 경제 활성화	도시경	역별 제활성화 E 용도			난한 특별조치법 / 업 집적시설 도입		정률부여 0.3 (최대 100%)	100%				
	변경		보행 가로	공공보	행통로 등	• 정비유	도지침에 ㄸ	h라 적합하게 조·	성 시	정률부여 (최대 30%)	30%				
			활성화		장물 이전/ 중화		•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			정률부여 (최대 50%)	10%				
			안전· 방재	방재	관련시설	•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설치 시			된 시설	정량부여 (최대 20%)	20%				
							③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 277: - 기부채남에 따른 용적률 완호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용 구분 인센 공공시설부지 제공 (도로 및 공원) (a = 부담면표)			}적률 완: 티브 산식 < (1 + 1.	計: 49.00 3 × a)	% 적용년 800.0%× (1.3	× 0.2201		화량
			<u> </u>	• i 조성 초3	<u>- 두담단석</u> 허용용적률 라하는 공개 시면적)	× (의무면	적을	(α= 356.5÷ 1, 800.0% × [(2 ÷ 1,619.5]		49.0%	277.9%				
건축물		최① 7	"방형 녹	① + ② 시율에 ¤) = 77.2m 다른 높이 : 전정거폐유	관리 : 7	5.1m		노지유)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신설	개방형녹지 = 적정건폐율 50%×(기준높이+20m)÷(80%-개방형녹지율) = 50%×(기준높이 (70m)+20m)÷(80%-20.1%) = 75.1m													
		고	② 공개공지 초과제공에 따른 높이 완화량: 2.1m 공개공지 초과조성 -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1/2)÷대지면적() ** 1준높이(70m)×(99.2m*×1/2)÷대지면적(1,619.5m*) = 2.1m												
○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한계선은 아래와 같이 지정, 건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전 건축물의 단, 제9지구의 제8지구 경계로부터 건축한계선(폭5m)은 공공보															
건축선에	기정		구분	11 - 4	2 2 (20): 5		축선 지정니			н	고				
관한 계획		 대로2-3(30m)변 저흥부 건축 대로2-3(30m)변 고흥부 벽면 중로3-3(13m)변 건축한계선(소로1-b(10m)변 건축한계선(고층부 벽면한계선(폭6m) 지정 건축한계선(폭2m) 지정			도민	현참고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	지 구분		주 된	건폐율	용적률	1				
	<u>, , ,</u>	면 적(㎡)		년 적(㎡)	위 치	용도	(%)	(%)	<u>높</u> 이(m)				
				<u>선</u> 은 아래의	바 같이 지정, 건 지구 경계로부터	축한계선으로	발생하는						
		변경	구분		7	건축선 지정나	용		비고				
			제9지구	 중로3 	2-3(30m)변 건축 3-3(13m)변 건축 1-b(10m)변 건축	ት한계선(폭2r	n) 지정		도면참고				
					인 가로경관을 유 는 건축지정선(폭)								
		전면 <u>공지</u> 공개	○ 건축한계선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 주변 지역과	›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 증진 및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대상지 동촉변 공개공지 지정									
기 ^E 사항에		<u>공지</u> 공공 보행 통로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구 서측 공공보행통로(4m) 지정 - 연접한 제8지구와 연계하여 조성하고 24시간 일반에 개방									
계호 (신설	!		○ 지구 동측○ 개방형녹지		시와 연계한 개방) 미만	형녹지 조성							
		개방형 녹지			n² 미만의 소규모 경우 도시계획위원				으				
					생태도심 개방형 ! 에 적합하게 조성	– –	'에 따 <u>르</u> 며,	상세계획은 '녹	-지생태도심				

■ 변경사유 :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 업무시설을 주용도를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규모 대지에 대한 건폐율 및 개방형녹지율 완화, 개방형녹지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9.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동 정비계획(안)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 기 타

2024. 4. 24.

- 1) 공람기간 : 2024. 4. 24. ~ 2024. 5. 24.(31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02-3396-5772)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제3086호 13-13 2024. 4. 2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457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등록 공고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신조 직인 내역

○ 공인명 : 서울시중구고향사랑기금 출납원인

○ 용 도 : 회계관계공무원 전용 (서울특별시중구회계관계공무원 직인규칙)

○ 규 격 : 1.8cm × 1.8cm

○ 수 량 : 1조

○ 문 양 : 한글전서체

사용개시일 : 2024. 4. 24.

2. 신조 공인내역

공인내역	신조 공인명	୧୧ଟ	재질	관수부서
신조교부	서울시중구 고향사랑기금 출납원인	公園の間では、一般の間では、一般の間である。	목(木)	자치행정과